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4년 10월 16일, 정부 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2.19.)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5.04.16.) 상정, 축조심사, 의결
(원안가결)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5.04.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및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제출)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및 등록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고, 공사업자가 해당 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하여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 ----- -----. 1. (현행과 같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 -----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

현행	개정안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7.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법률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임의적 취소사유),

공사업자가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시·도지사가 공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필요적 취소사유).

법제처는 정부의 국정과제 1-3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의 달성을 위하여 관련 허가·지정·신고·등록 등의 취소사유를 전수조사 한 뒤 ‘영업취소사유 합리화를 위한 법령정비’를 추진 중인데,

취소사유의 합리화를 위하여 사유에 ‘정당한 사유¹⁾ 없이’를 추가하는

1)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내용으로 정비되는 법률은 총 25개가 발의²⁾되었고 그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법률안은 동 개정안과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2204724)임.

개정안과 같이 일정 기간 이상 휴업이나 영업 미개시를 이유로 지정·등록을 취소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면 환경적·외부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제재 처분을 개선하고 지정교육훈련기관 및 공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재 지정교육훈련기관은 전기공사협회가 지정되어 있고 관련 규정 입법 이후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사례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의미

2) 정부가 제출한 제재처분 사유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목록은 [참고자료]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원이)

정부가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심사보고서 불입서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호 중 “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를 “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공사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1조(지정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3개월 이상의 휴업으로</u> 교육훈련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u>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휴업하여</u> ----- -----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는 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제4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8조(등록취소 등) ① ----- ----- ----- ----- ----- --.
1. ~ 6의2. (생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u>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1년</u>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7. <u>공사업의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u> ----- ----- -----
8. (생략)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	----------------